

2026학년도 제9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 시: 2026. 7. 9.(목), 오후 2시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회의 개요 및 안건

- ◎ 일 시: 2026. 7. 9.(목), 오후 2시
-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생활관규정」개정(안)	생활관	행정팀장	'10
2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안)	교학팀	교학팀장	'15
3	심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교학팀	교학팀장	'15
4	심의 「마이크로디그리운영규정」 개정(안)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15
5	심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장	'30
6	심의 「직제규정」 개정(안) / 연관규정	기획팀	기획팀장	'10
7	심의 「업무분장규정」&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문화센터규정 개정(안)]	기획팀	기획팀장	

◎ 추후 일정

심의기구(순)	일정
교무위원회	- 2026. 7. 14.(화)
대학평의원회	-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 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차기 규정심의회의	- 2026. 7. 23.(목), 오후 2시 예정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생활관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생활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관비) ①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는 <u>는</u>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유발생 시기</th><th style="text-align: center;">입사 금액</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해 학기 개시일 전</td><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비 전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td><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비 전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td><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td></tr> </tbody> </table> ③방학 중 생활관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생활관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개정 2018.10.25.) <삭제 2022.6.28.> 4. 생활관비 책정 <u><문구신설></u>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6.28.> 6.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사유발생 시기	입사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제14조(생활관비) ①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 <u>책정 및 감면은</u>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생활관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개정 2018.10.25.) <삭제 2022.6.28.> 4. 생활관비 책정 <u>및 감면</u>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6.28.> 6.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사유발생 시기	입사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마이크로디그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와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이 직접 마이크로디그리를 설계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조(정의) 항 신설 - ‘학생 설계형 마이크로디그리’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따라 교과목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는 문구 추가 • 제3조(설치 및 폐지) - ①마이크로디그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 - ②학생 설계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생이 Academic Advisor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신청서를 학과(부)에 제출한다로 문구 수정		
기대효과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한 학습 몰입도 및 학습 참여도 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마이크로디그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마이크로디그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① ‘마이크로디그리’란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과 시대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주관부서’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마이크로디그리를 설계하고 운영·관리하는 대학, 학과(부) 또는 교내 기관을 말한다. <u><항 신설></u>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학생 설계 마이크로디그리’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따라 교과목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u>
제3조(설치 및 폐지) ①마이크로디그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하여 <u><문구신설></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 2. 교무처에서 공모한 분야 3. 그 밖의 필요한 분야 <u><항 신설></u> ②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설치 심의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④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u>개설 후 최근 3년간 누적 이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24.6.3.)</u> 2.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3조(설치 및 폐지) ①마이크로디그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하여 <u>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 2. 교무처에서 공모한 분야 3. 그 밖의 필요한 분야 <u>②학생 설계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생이 Academic Advisor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신청서를 학과(부)에 제출한다.</u> ③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설치 심의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u>④ <현행과 같음></u> ⑤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u><삭제></u>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글로벌교육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외국대학의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정리 관련 규정 제정 당시, 글로벌교육지원센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적용 규정(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교육부 질의 결과 다른 조항인 제13조의 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되는 것을 안내 받아 이에 맞게 규정 수정 필요 • 학과 해당 학위명 수정 학과개설 요청 시 요구한 학위명 오류에 의한 수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6.29.)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조(학위 과정) 제1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반영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제2항 5호 조문 인용 방식으로 문구 수정 • 제11조(입학 자격) 제4항 조문 인용 방식으로 문구 수정 • 제13조(지원 및 입학 전형) 제3항 조문 인용 방식으로 문구 수정 • 제16조(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제2항 조문 인용 방식으로 문구 수정 • 【별표 2】 학위종별 개정 문학석사, 문학박사 → 한국어교육학석사, 한국어교육학박사			
기대효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주관 부서 의견 조회 시행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6.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 ②일반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삭제> ⑤일반대학원 석사 특별과정과 박사 특별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특수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학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 등 전공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기준에 의해 설치된 학과 중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1 이상의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박사학위 과정의 신설 시에는 설치하기 개시일, 운영 시에는 매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3편 이상, 예·체능계열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4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고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따른다. ⑨학과는 제7항과 제8항의 이행 실태를 매학기 개시 전에 교학팀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중지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모집중지된 학과의 경우, 학과 설	제3조(학위 과정) ①~⑩(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치기준을 충족하여 요청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설치할 수 있다. ⑪각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⑪각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본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이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③각 대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전담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 1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입학 자격) ①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국인이나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학생규정」 제3조(입학 언어 기준) 성적 이상 2. 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 :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③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학생규정」 제3조(입학 언어 기준) 성적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입학 자격) ①~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외국인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이공계 및 예체능계 학생, 교류대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신·편입생 및 <u>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입학 언어 기준 취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④외국인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이공계 및 예체능계 학생, 교류 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신·편입생 및 <u>제3조 11항에서 정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입학 언어 기준 취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및 입학 전형) ①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u>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할 원하는 자는 외국 대학의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 및 입학 전형) ①~②(현행과 같음) ③<u>제3조 11항에서 정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할 원하는 자는 외국 대학의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①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u>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6조(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①(현행과 같음) ②<u>제3조 11항에서 정하는</u>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학 위 중 별

1. 일반대학원

계열	학 과	학 위 중 별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	-	-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	-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수정)문학석사	(수정)문학박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군 사 학 과	-	군 사 학 박 사
	ESG·공공정책학과	ESG경영학석사 공공정책학석사	ESG경영학박사 공공정책학박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공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설융합시스템학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수 소 에 너 지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개 정 (안)

【별표 2】

학 위 중 별

1. 일반대학원

계열	학 과	학 위 중 별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	-	-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	-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예 술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국어교육학석사	한국어교육학박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군 사 학 과	-	군 사 학 박 사
	ESG·공공정책학과	ESG경영학석사 공공정책학석사	ESG경영학박사 공공정책학박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공학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설융합시스템학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수 소 에 너 지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현행				개정(안)			
예비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예비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	-	-		-	-	-
	-	-	-		-	-	-
	태권도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박사
	스포츠학과	스포츠학석사	스포츠학박사		스포츠학과	스포츠학석사	스포츠학박사
	예술학과	예술학석사			예술학과	예술학석사	
	스포츠융합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융합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u><신설></u>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형방법 및 절차) ①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술고사의 경우 학과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②<삭제> ③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운영하는</u> 학위과정의 전형방법은 협약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전형방법 및 절차) ①~②(현행과 같음) ③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이 운영하는</u> 학위과정의 전형방법은 협약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32조의 2(선수과목) ①학부전공과 상이한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학부전공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운영하는 교육과정에</u> 입학한 학생은 협약에 따라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③선수과목은 수업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선수과목은 당해 학기 학부 및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으로 한다. ⑦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선수과목이수계획표를 수강신청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선수과목) ①학부전공과 상이한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학부전공 교과목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에</u> 입학한 학생은 협약에 따라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⑦(현행과 같음)
제33조(취득학점의 특별인정) 타 대학원 또는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한 과목씩,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제33조(취득학점의 특별인정) 타 대학원 또는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에서 취득한 동일 및 유사과목을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여</u>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u>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에 입학하여</u>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과의 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u><신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팀	관련부서	교무처 /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공학교육인증 미운영 확인 / 부서 폐지 합의		
법인이사회	● 심의해당		
대학평의원회	● 해당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과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센터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나, 최근 학과들의 공학인증 포기 추세 및 대학 자체 학사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인증 관리 업무가 대폭 축소됨 ● 학사관리팀의 공학계열학과 수요조사 결과 센터 폐지를 요청해 옴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학사관리팀-3558(2026. 6. 11.)「소속 부속기관 운영 현황 의견 회신 (학사관리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0조(부속교육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삭제		
기대효과	●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구조혁신에 대응하는 슬림한 조직 구축 ● 변화하는 고등교육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 학과 중심의 공학교육 및 교육성과 관리로 전환 학과별 CQI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교육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 주관 부서 의견 조회 시행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 제출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 관련 규정 폐지	
첨부자료	1.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소속 부속기관 운영 현황 의견 회신 (학사관리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1부. 3. 연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0조(부속교육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 교육기관을 두며, 각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1. 평생교육원(전주) (개정 2024.12.26.) 2. 평생교육원(진천) (개정 2024.12.26.) 3. 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 (개정 2023.12.29.) 4. (삭제 2013.4.16.) 5. 교육연수원 (개정 2008.4.28.) 6. (삭제 2018.12.6.) 7.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8. (삭제 2020.9.11.) 9. (삭제 2018.12.6.) 10. <삭제 2026.1.1.> 11. <u>공학교육혁신센터 (개정 2011.6.28.)</u> 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개정 2011.6.28.) 13. 사이버평생교육원 (개정 2011.6.28.)	제10조(부속교육기관) 본교에 다음의 부속 교육기관을 두며, 각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6.) 1. 평생교육원(전주) (개정 2024.12.26.) 2. 평생교육원(진천) (개정 2024.12.26.) 3. 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 (개정 2023.12.29.) 4. (삭제 2013.4.16.) 5. 교육연수원 (개정 2008.4.28.) 6. (삭제 2018.12.6.) 7.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8. (삭제 2020.9.11.) 9. (삭제 2018.12.6.) 10. (삭제 2026.1.1.) 11. <u>(삭제 2026.XX.XX.)</u> 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개정 2011.6.28.) 13. 사이버평생교육원 (개정 2011.6.28.)
<u><신설></u>	<u>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 . .))</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우 석 대 학 교

수신자 기획팀장

(경유)

제 목 소속 부속기관 운영 현황 의견 회신 (학사관리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1. 관련: 기획팀-1229호 『소관 부속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의견 조치』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속 부속기관의 향후 운영 여부 및 존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기관 운영 현황

부속기관명	운영 여부	존치 여부	운영 필요성 및 근거
공학교육혁신센터	X	X	공학교육인증 미운영으로 해당 기관 폐지

끝.

학사관리팀장

서명생략

선임 정영돈 학사관리팀장 06/11 장영진

접 수 과장 이승인 기획팀장 김대용 부처장(기획) 차동석 기획처장 전 결 06/11 함운영

협 조

시행 학사관리팀-3558 (2026. 6. 11.) 접수 기획팀-1263 (2026. 6. 11.)

우 5533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 <http://www.woosuk.ac.kr/>

전화 063-290-1033 /전송 063-290-1030 / zeromoney@woosuk.ac.kr / 공개

「공학교육혁신센터」 폐지에 따른 연관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연관 규정명	현행	개정(안)
업무분장규정	제9조2(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23. 생략 <u>24. 공학교육혁신센터</u>,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3.12.29.) 25.~29. 생략 [본조 신설 2023.1.30.]	제9조2(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23. 현행과 같음 <u>24. <삭제></u>,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석대학교부속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3.12.29., <u>2026.XX.XX.</u>) 25.~29. 현행과 같음 [본조 신설 2023.1.30.]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생략 2. 감경시간 가. 생략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산학연교육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u>공학교육혁신센터장</u>,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2022.11.16., 2023.7.27., 2024.9.30., 2026.1.1.) ②~ ③ 생략 [조문개정 2008.2.20., 2012.1.1.]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감경시간 가. 현행과 같음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산학연교육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u><삭제></u>,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2022.11.16., 2023.7.27., 2024.9.30., 2026.1.1., <u>2026.XX.XX.</u>) ②~ ③ 현행과 같음 [조문개정 2008.2.20., 2012.1.1.]
공학교육혁신센터규정	전문	폐지
	<u><신설></u>	<u>부</u> <u>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업무분장규정」 &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문화센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6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15. <u>16. 전주한방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u> 1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1.30.] [전문개정 2024.10.1.]	제6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15. 16. <u><삭제 2026.xx.xx.></u> 1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1.30.] [전문개정 2024.10.1.]
제20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2. 생략 <u>13. <삭제 2022.10.13.></u> 1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20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2. 현행과 같음 <u>13. 전주한방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u> 1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우석대학교 한방문화센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과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기획팀장</u>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과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총무팀장</u>으로 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교 규정 내 해당 조항 변경 •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51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고시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관련근거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1. 상위법령 반영 및 행정 체계 개선 • 상위법령 현행화 -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번호 수정 - 법적 용어 최신화 (예: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관’ 등) • 총장의 책무 확대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변경 시 30일 이내 검역본부장 통지 의무 신설 - 동물실험 진행 감독 요청 및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관리 의무 부여 - 위원 및 종사자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교육 기회 제공 근거 마련 • 위원 구성 및 교육 강화 (제4조, 제6조) - 수의사 위원 자격 요건에 ‘전임수의사’ 추가 - 모든 위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 정기 교육 이수 의무화 2. 심의 체계 및 위원회 기능 전문화 • ‘전문위원’ 제도 신설 (제8조) - 기존 ‘사전검토(전문심사위원)’ 제도를 전면 개편 - 분야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 및 실험 진행·종료 평가 사전 검토 • 위원회 운영 정비 (제5조, 제7조) - 간사 지명 근거 및 핵심 업무 분장(안전 검토, 회의록 작성 등) 명문화 - 동물실험계획 심의·변경심의 회의 시 수의사 위원이해관계 없는 위원출석 의무화 3. 동물실험계획 제출 및 변경 절차 구체화 • 심의 내실화 및 서식 분리 (제10조) - 신규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 (실험 시작 7일 전 -> 14일 전) - ‘교육(실습)·훈련용 동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의1호 서식)’ 신설 • 변경심의 기준 체계화 (제10조) - 위원회 심의 대상:고통등급 D/E 상향, 사용 마리 수 50% 미만 증가(50% 이상은 신규심의), 진정·진통·마취·안락사 방법 변경 등 - 위원장 승인 대상 (사전검토):3개월 이내 기간 연장, 수행자 변경,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4. 사후 관리·감독 및 시설 실태조사 강화 (제4장)		

	● 불만사항 처리 체계 구체화 (제15조) - 종사자 고충·불만사항 접수 및 조사 절차 명문화 - 조사 회의 소집 전까지 기관 수의사에게 실험 중지 권한 부여 ● 「심의 후 감독」 제도 신설 (제16조) -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별지 제9호)’ 기반 현장 점검 의무화 - 미승인 또는 불일치 실험 진행 시 즉시 중지 요구 권한 명시 - 위법사항 발견 시 총장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체 없는 통보 의무화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명문화 (제17조) - 시설 관리실태 확인·평가 권한 및 점검자 입회 규정 신설 - 표준화된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별지 제10호)’ 도입으로 점검 체계 일원화 ● 별지 서식 전면 정비 - 국가 고시 기준에 맞추어 별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전면 신설 및 재배치	
기대효과	● 동물복지 및 연구윤리 강화: 고시 기준에 따라 취급·관리·통증완화 절차가 표준화되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들고 윤리적 기준 강화 ● 심사·연구 품질 및 행정적 신뢰성 상승: 심사기준과 제출서류, 기록보존 체계의 통일로 심사 효율성과 재현성이 높아지고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들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우 석 대 학 교

수신자 기획처장(기획팀장)

(경유)

제 목 소속 부속기관(한방문화센터) 의견 제출 회신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획팀-1229(2026.6.5.)호와 관련입니다.
3. 한방문화센터는 실제 임대용으로 사용 중이며 관리 업무를 총무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를 총무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인수인계 의사가 있음을 회신합니다. 끝.

사무처장

서명생략

과장	강정화	총무팀장	임성규	사무처장	전결 06/08 서용성		
접 수 과장	이승인	기획팀장	김대용	부처장(기획)	차동석	기획처장	전 결 06/09 함윤영

협 조

시행 총무팀-6333 (2026. 6. 8.) 접수 기획팀-1245 (2026. 6. 8.)
 우 5533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 <http://www.woosuk.ac.kr/>
 전화 063-290-1064 /전송 063-291-9312 / jhkang@woosuk.ac.kr / 공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총장의 책무) ①총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u>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u>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항 신설></u> <u><항 신설></u> <u><항 신설></u> <u><항 신설></u>	제3조(총장의 책무) ①총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해야 한다. ③총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u>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u>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u>⑤총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u> <u>⑥총장은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u> <u>⑦총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u> <u>⑧총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u>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u><목 신설></u>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에 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u>라. 「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u>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에 1년

현 행	개 정 (안)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5조 각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u>④위원장은 안전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또는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회의 안전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u>④ <삭제></u>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현 행	개 정 (안)
다. <u>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u> -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u>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u> -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u><호 신설></u> <u><호 신설></u> <u>7.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u>④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u>	다. <u>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u> -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u>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생산, 도입, 관리, 실험)·종료(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u> -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u>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u> <u>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u> <u>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u>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u>
제7조(회의) ①~③ 생략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u>	제7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제10조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은 <u>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에 상정안전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u> ②위원장은 제1항에 <u>따라 사전 검토한 전문심사위</u>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u>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위원장은 제1항에 <u>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u>

현 행	개 정 (안)
<u>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u> <u><호 신설></u> <u><항 신설></u>	<u>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 <u>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u> <u>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u> <u>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u>
제10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직무와 관계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 <u><호 신설></u>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u>년</u>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u>당해 년도</u>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u>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④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 <u>2.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습)·훈련용 동물사용 승인신청서</u>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u>연</u>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u>해당년도</u>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u>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심의를 요청해야 한다.</u>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④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u>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u>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방법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u><항 신설></u>	⑤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u>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의 변경 2.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3.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4.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5.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6.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7.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8.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9.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 제5항제3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 3.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제11조(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등) 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관한 사항	제11조(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등) 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10. <삭제>

현 행	개 정 (안)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 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계획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 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제13조(동물실험수행) ①~② 생략 ③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실험수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①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③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불만사항 처리 등) ①위원회는 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고충과 불만사항을 기관 내 종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요구받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기관 수의사에게 동물실험을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만사항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현 행	개 정 (안)
④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⑤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2. 증명은 법률 또는 기관별 규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적절하고 올바른 교정을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u>제4장 동물실험시설의 평가</u> 제16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제4장 심의 후 감독과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u> 제16조(심의 후 감독) ①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④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⑦연구책임자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

현 행	개 정 (안)
	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점검 방법) ①위원회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교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u> <u><항 신설></u> <u>③</u>시설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위원회는 <u>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u> <u>②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 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u> <u>③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u> <u>④</u>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9조(비밀유지) ①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u>제9호</u>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①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u>제10호</u>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u>제40조</u> 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u>제27조</u>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u>제88조</u> 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u>등 타법률</u>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_____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실험 제목	
실험 기간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실험구분	☐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동물실험 수행자 (1)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동물실험 수행자 (2)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실험 동 물	동물종류	☐ 마우스 ☐ 랫드 ☐ 토끼 ☐ 기니피그 기타()	미생물학적 등급	☐ SPF ☐ 준SPF(Clean) ☐ 일반(Conv.) ☐ 기타()
		계 통	사육 희망 장소	☐ barrier구역 ☐ Semi-barrier구역 ☐ 일반구역
	성별/수량	♂: ♀:	반 입 예 정 일	년 월 일
	체중/주령	gram/ 주령	동 물 구 입 처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처에 사전 보고할 것)		
☐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함	위험군 분류	☐ 제3위험군(병원체:) ☐ 제4위험군 (병원체:)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실험지침에 따름
	병원체 분류	☐ 제1급감염병(병원체:) ☐ 제2급감염병(병원체:) ☐ 제3급감염병(병원체:) ☐ 제4급감염병(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2. 연구 및 실험개요

1. 연구목적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2. 동물실험의 필요성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 PubMed ☐ SCOPUS ☐ 한국학술정보 ☐ 기타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 (시험물질, 대조물질,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
-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혈액, 뇨, 조직 등)

※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필요 사유 (단 원칙적으로 불허함)

7. 환경풍부화(Enrichment),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8.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 ☐ 고통등급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 고통등급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10번에 사유 기재

9.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	마취제 · 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상세 사유 기재)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결과 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12. 안락사 방법	
☐ 약제 (사용약물명, 농도, 투여방법 :) ☐ CO2 가스(농도나 방법 추가 기재)	
☐ 기타 ()	
☐ 동물이 의식을 잃은 후 죽음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최종 방법 ()	
☐ 실시자 ()	
전 과정을 기술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13. 연구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본 연구를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OOOOO 동물실험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3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1년마다 재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연구책임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OOOO장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교육(실습)·훈련용 동물사용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_____

교 육 명	(교과목명)
	(상세교육명)
	(영 문)
실험 제목	
실험 기간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실험구분	☐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교육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윤리/이용 교육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기술훈련	해당 기술 경력 ☐ 유 ()회/년 / ☐ 무 (연수기관명 :) 해당 기술의 교육경력 ☐ 유 ()회/년 / ☐ 무 (교육기관명 :)		
강사 (1)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윤리/이용 교육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기술훈련	해당 기술 경력 ☐ 유 ()회/년 / ☐ 무 (연수기관명 :) 해당 기술의 교육경력 ☐ 유 ()회/년 / ☐ 무 (교육기관명 :)		
강사 (2)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윤리/이용 교육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기술훈련	해당 기술 경력 ☐ 유 ()회/년 / ☐ 무 (연수기관명 :) 해당 기술의 교육경력 ☐ 유 ()회/년 / ☐ 무 (교육기관명 :)		
교육책임자 및 강사의 역할	교육책임자 : 강사1 : 강사2 :					

실 험 동 물	동물종류	☐ 마우스 ☐ 랫드 ☐ 토끼 ☐ 기니피그 ☐ 개 ☐ 돼지 ☐ 기타()	미생물학적 등급	☐ SPF ☐ 준SPF(Clean) ☐ 일반(Conv.) ☐ 기타()
		사육 희망 장소		☐ barrier구역 ☐ Semi-barrier구역 ☐ 일반구역
	계 통		반 입 예 정 일	년 월 일
	성별/수량	♂: ♀:	동 물 구 입 처	
	체중/주령	gram/ 주령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처에 사전 보고할 것)		
☐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함	위험군 분류	☐ 제3위험군(병원체:) ☐ 제4위험군 (병원체:)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실험지침에 따름
	병원체 분류	☐ 제1군감염병(병원체:) ☐ 제2군감염병(병원체:) ☐ 제3군감염병(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2. 교육(실습)·훈련 개요

1. 목적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2. 동물사용의 필요성

3. 동물사용 전 대체법 적용 유무 및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해당사항별 기재 및 해당 기구 사진 첨부)			
☐ 시뮬레이션 (사용기간 : _____ / 1인당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분,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			
☐ 마네킹, dummy 등 실습기구 (사용기간 : _____ / 1인당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분,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			
☐ 사체나 시신 이용 실습(cadaver) (사용기간 : _____ / 1인당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분,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			
* 출처와 교육전후 보관장소 및 폐기방법 기재			
☐ VR(가상현실) 이용 실습 (사용기간 : _____ / 1인당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분, 총 교육시간 _____ 시간)			
☐ 기타 _____			
☐ 미사용 시 사유 (_____)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 동물선택이유와 관련 문헌 기재

5. 사용 동물 수 및 강사 수 산출 근거						
☐ 교육생 수 :	명/	총 강사 수 :	명/	훈련테이블(장비) 수 :	개/총 동물 수 :	마리
* 교육생 구성 특성 기술						
☐ 훈련테이블(장비)당 교육생 수 :	명					
☐ 강사(실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람) 당 교육생 수 :	명					
☐ 지원인력 수 :	명					
☐ 기타						
☐ 총 교육생 대비 강사 수 산출 사유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교육(실습) 후 동물의 생존여부 : ☐ 비생존 ☐ 생존 * 생존을 시키는 이유 생존을 시키는 기간 및 관리방안 교육(실습)훈련 후 조치 교육(실습)훈련 중 청정도 : ☐ 무균(aseptic) ☐ 청정(clean) ☐ 일반 교육(실습) 훈련의 상세 내용 (아래 사항 필수 포함) - 검역, 순화, 교육(실습) 전 동물에게 실시하는 사전 조치(실험)에 대한 상세방법 - 동물에게 투여하는 물질(명칭, 농도, 용매 등) 및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혈액, 뇨, 조직 등) - 동물의 진정, 진통 등 통증관리 방안과 마취 - 교육생별로 수행하는 교육(실습)훈련 내용 - 교육(실습)훈련 중 동물에 발생하는 비상조치 등	
※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유	

7. 환경풍부화(Enrichment),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교육(실습)훈련 전 절식이나 절수 여부 ☐ 여 ()시간/일 ☐ 해당없음 교육(실습)훈련 전부터 종료 시까지 동물 관리 사항 교육(실습)훈련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실시하는 환경풍부화 *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기술 * 동물에게 교육(실습)훈련 전후 조치해야하는 사항을 모두 기술	

8.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 고통등급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고통등급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9번에 사유 기재	

9.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	마취제 · 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교육(실습)·훈련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	(상세 사유 기재) 예) 법적규제시험(출처)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결과 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증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12. 안락사 방법 (기관과 실험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
☐ 약제 (사용약물명, 농도, 투여방법 :) ☐ CO2 가스(농도나 방법 추가 기재) ☐ 기타 () ☐ 동물이 의식을 잃은 후 죽음의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최종 방법 () ☐ 실시자 () 전 과정을 기술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13. 교육(실습)훈련 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 사용하는 물질 및 동물과 관련한 안전장치, 설비 및 개인안전보호장비
- 교육(실습)훈련 중 강사/지원인력 등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방안
- 교육(실습)훈련 중 교육생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방안
- 교육생 및 강사/지원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사항 등

본 교육(실습)·훈련의 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교육(실습)·훈련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승인 기간은 최대 3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1년마다 재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3. 교육책임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OOOO장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교육훈련용 동물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책임자

(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실험기간	20 ~ 20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제목					
실험목적					
승인실험기간	20 ~ 20 총 (2, 3)년 승인 중 (2, 3)년째				
동물실험계획	☐ 변경없이 계속 ☐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승인받은 실험계획	1년차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2년차				
	3년차				
역할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연구책임자					
실험수행자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제목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험변경 내용	☐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교통등급의 변경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 동물 종 추가 또는 변경 ☐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 안락사방법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수술방법								
동물종								
동물 사용수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진정.진통.마취 방법								
안락사방법								
실험기간변경/ 연장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성 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그 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기 접 수 번 호)			
과 제 명			
실험제목			
실 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평가기준			
1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7	환경풍부화,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연구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8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 확인 ☐ 미확인	9	Grade D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요구한 동물 종(계통, 등급)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Grade E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5	요구한 동물 마리수의 근거 ☐ 적합 ☐ 부적합	10	인도적인 종료시점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6	동물실험 방법(프로토콜)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11	동물구입처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12	연구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 적합 ☐ 부적합

평가결과 및 의견	
결 과	의 견
☐ 원안승인 ☐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 ☐ 승인 거부/미승인	
	평가위원 (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육이수내용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과 제 명	
실 험 제 목	
실 험 기 간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승 인 일 자	
접 수 번 호	
승 인 번 호	
심 의 위 원 의 견	

우석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우석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IACUC Protocol Approval

1. Original protocol information

Protocol Title		
Principal Investigator	Affiliation	
	Name	
Study Period		

2. Approval

Review Date	
Approval Date	
Approval Number	
Approval Details	

This animal care and use protocol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ACUC at Woosuk University

20 . . .

Chairperson signature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위원회 승인번호				
과 제 명				
실험제목				
변경 승인 여부	☐ 없음 ☐ 있음 (변경승인번호, 승인일 :) 변경내용:			
연구 책임자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동물실험 수행자				
내 용	승인사항		변경사항	
실험 기간				
동물 종 (계통)				
동물품질등급				
총 사용 마리수				
고통등급				
안락사방법				
기타사항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 보고 합니다. 연구책임자년 월 일 (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

가. 과제 정보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담당자				

나. 연구현황표

내 용	승인 사항 *승인된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진행 현황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현재
동물실험의 종류 (해당사항 모두표시)	☐ 시료의 투여 및 접종 ☐ 외과적 처치 ☐ 방사선 조사 ☐ 발암 ☐ 기타 ☐ 재료 및 시료의 채취 ☐ 유전 및 육종 ☐ 감염 ☐ 생리적 상태 및 행동 관찰	☐ 시료의 투여 및 접종 ☐ 외과적 처치 ☐ 방사선 조사 ☐ 발암 ☐ 기타 ☐ 재료 및 시료의 채취 ☐ 유전 및 육종 ☐ 감염 ☐ 생리적 상태 및 행동 관찰
고통등급	☐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실험동물정보	- 동물종(계통) : - 마릿수 : - 구입처(반입일) :	- 동물종(계통) : - 마릿수 : - 구입처(반입일) :
사육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실험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진정/마취, 진통/항생제		
인도적 종료시점		
안락사방법		
위해물질 사용여부		

다. 연구수행현황

구분	연구수행과정	Y	N	N/A	일시	실시자
1.	실험계획서 승인	☐	☐	☐		
2.	동물실험시설 이용신청	☐	☐	☐		
3.	동물 구입 또는 사육상에서 입고	☐	☐	☐		
4.	동물검역 또는 순치	☐	☐	☐		
5.	실험수행	☐	☐	☐		
6.	안락사	☐	☐	☐		
7.	사체처리	☐	☐	☐		
8.	종료보고	☐	☐	☐		

라. 세부점검표

구분	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I. 동물실험계획서와 인력관리						
1.	연구책임자와 실험수행자가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사용지침 등, 기관의 동물 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2.	실험수행자가 연구수행을 위한 최신의 계획서와 수행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승인된 최종 계획서를 실험공간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3.	실험수행자가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가?	☐	☐	☐		
4.	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번호 유무)	☐	☐	☐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사육장소가 계획서에 기재된 장소와 일치하는가?	☐	☐	☐		
II. 연구과정						
1.	동물의 반입은 계획서 승인 후 수행되었는가? (동물반출입기록과 비교)	☐	☐	☐		
2.	동물종, 계통, 연령, 수량 및 구입처가 승인된 사항과 일치하는가?	☐	☐	☐		
3.	반입동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검역실 체류기간과 관찰이 수행되었는가?	☐	☐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가 사육케이지에 표시되었는가?	☐	☐	☐		
5.	동물사육장소가 적합한가?	☐	☐	☐		
6.	특별한 주거 및 사육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해당시)	☐	☐	☐		
7.	동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가?	☐	☐	☐		
8.	동물관찰자 지정 및 인수인계 절차가 있는가?	☐	☐	☐		
9.	주말과 휴일, 비상사태 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10.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	☐	☐		
11.	주사제, 혈액채취 및 유체 수거량 및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12.	수행된 실험과정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	☐		
13.	실험수행자가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되어 있는가?	☐	☐	☐		
14.	실험수행자는 적절한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갖추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가?	☐	☐	☐		
15.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 시 수의사의 조언(동물의 취급, 진정, 마취, 안락사,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얻을 수 있는가?	☐	☐	☐		

III. 마취(해당 시)						
1.	마취제의 보관 및 사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통기한, 항정신성의약품 재고량 관리 등)	☐	☐	☐		
2.	흡입마취용 기구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있는가?	☐	☐	☐		
3.	동물이 적정 농도의 마취 준수 절차를 통해 의식이 없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는가?	☐	☐	☐		
4.	약물/마취제/진통제를 정확하게 투여하고 기록하였는가?	☐	☐	☐		
5.	계획서에서 승인된 기법에 따라 마취를 수행하는가?	☐	☐	☐		
IV. 수술(해당 시)						
1.	수술 장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가?	☐	☐	☐		
2.	생존 수술을 위한 멸균기구, 멸균장갑, 수술용 마스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3.	시술자는 마취와 수술,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는가?	☐	☐	☐		
4.	절개는 고통감소를 위해 적절하며 봉합되어 있는가?	☐	☐	☐		
5.	수술진행 중 체온유지를 위해 온도 조절장치를 사용하는가?	☐	☐	☐		
6.	멸균된 기구들은 사용전 적절하게 보관되는가?	☐	☐	☐		
7.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 (유효기간 등)	☐	☐	☐		
8.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된 진통제/항생제를 사용하고 투여정보(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9.	수술한 동물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수술내역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10.	수술 후 사후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있는가?	☐	☐	☐		
V. 인도적 처리기준 및 고통감소 방안						
1.	실험수행자가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분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	☐		
2.	계획서에 기재된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기준을 실험수행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	☐		
3.	예기치 못한 동물의 질병발생 시에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시행하는가?	☐	☐	☐		
4.	동물탈출 및 위해요소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	☐		
5.	가학적인 환경과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가?	☐	☐	☐		
VI. 기록관리						
1.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가 있는가?	☐	☐	☐		
2.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기록하였는가? (별지 제8호서식)	☐	☐	☐		

3.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을 기록하였는가?	☐	☐	☐		
4.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5.	동물실험시설의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적정하게 관리기록 되는가?	☐	☐	☐		
6.	동물반출입내역을 기록하였는가?	☐	☐	☐		
VII. 안락사						
1.	계획서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	☐	☐		
2.	안락사 및 사체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수행되는가? (처치 전의 동물 또는 사체가 방치되어 있진 않는가?)	☐	☐	☐		
3.	안락사 수행 후 사망확인을 하는가?	☐	☐	☐		
VIII. 사육 또는 번식(해당 시)						
1.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장소에서 사육·번식하여 이용하는가?	☐	☐	☐		
2.	개별동물에 식별 가능한 이표, 표식 등의 기록된 부착물이 있는가?	☐	☐	☐		
3.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	☐	☐		
4.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	☐	☐		
5.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	☐	☐		
6.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	☐	☐		
7.	동물종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	☐	☐		
8.	사료는 유효기간 이전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는가?	☐	☐	☐		
9.	사료와 깔짚은 오염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일반쓰레기 등과 격리하여 보관하는가?	☐	☐	☐		
10.	깔짚의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가?	☐	☐	☐		
11.	동물을 사육장소 외의 실험실에 24시간 이상 계류하지 않는가?	☐	☐	☐		
12.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랫드, 마우스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서 내 승인절차가 있는가?	☐	☐	☐		
13.	예기치 못한 응급 발생 상황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	☐	☐		
14.	환경풍부화(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미고려시 동물실험계획 승인근거와 일치하는가	☐	☐	☐		
15.	질병 및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가?	☐	☐	☐		

16.	교배, 출산, 이유 기록 등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17.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	☐	☐		
18.	번식사육 시,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	☐	☐		
의견	특이사항 기재 시 발생장소, 관련 동물사항을 포함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확인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심의 후 감독표 작성요령>

1.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일 현재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대상으로 하나, 완료된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2. 원칙적으로 점검자는 위원이 되며, 확인자는 각 동물시설의 시설운영자, 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함
 3. 동물실험의 각 단계에서 점검할 수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N/A로 표시하고 비고에 사유를 적음
 4. 심의 후 감독은 실험계획서대로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라. 세부점검표”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준수여부 또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함
 5. 동물실험계획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검항목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정 내 기준의 준수여부 및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작성함
- *기관운영규정을 대체하는 시설이나 부서별 운영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비고에 해당 규정명을 적음(가급적 조항명이나 내용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실태조사일시 :

시설명				
구 분	점검항목	양호	보통	미흡
운영	기관 내 동물실험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 () 명 - 구성 : 수의사(), 행정인력(), 관리원(), 기타()	여/부 ()		
	동물종별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가?	여/부 ()		
	시설 내 별도의 운영 규정이나 표준절차가 있는가? - 규정명 - 제개정일 - 규정 비치 및 유지.관리 여/부 (의견기재)	여/부 ()		
	재해, 응급, 비상상황 대응 대책이 있는가? - 비치 및 교육 여부 : 비치 (), 교육()	여/부 ()		
	재난, 정전,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람 및 동물)			
	소방, 보안, 비상전력 장치 등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상 훈련,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수의학적 프로그램이 있는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의학적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부 ()		
	입.출입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가? - 입.출입요령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입.출입 관리대장을 기록.보존 -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관리 - 입실 전 소독 실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는가? - 방법 - 항목 - 주기			
	시설	시설은 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시설의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방충방서) 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미생물 등)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인가?				
(공간구획) 시설은 격리실(질병이 있는 동물의 격리, 진단 및 치료), 동물종별 사육공간, 전실, 특수실험실 등 목적에 따라 분리, 구획되어 있는가?				
(배수) 시설은 배수가 잘되며 배수로에 동물실험 등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며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는가?				

	(채광조명) 시설은 안전과 동물실험 등에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온습도) 시설 및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가 있으며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여/부 ()		
	(공조) 시설은 공기흐름이 원활하고 오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기 조화 시설이나 공기 정화 시설이 있으며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여/부 ()		
	(동선) 사람, 동물, 물품(장비) 등의 동선이 분리 또는 구분되며 표시하고 있는가?			
	(시설) 시설 내 벽과 바닥, 천장 등을 시설사용목적에 맞게 내화성,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로 유지하는가?			
	(부대시설 위생)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시설 위생) 외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나 시설이 있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구분 보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부 ()		
	(동물실험실) 동물부검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실험실을 갖추었는가? - 실험실 수 또는 확인한 실험실명(번호)	여/부/해당없음 ()		
	(실험실 환경)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 등 동물실험과 동물과 사람의 안전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 장치/설비현황 :			
	(실험실 환경) 실험실에는 시험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사육실 환경) 사육실의 바닥과 벽이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마감재인가?			
	(사육실 환경) 사료, 깔짚, 사육용품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갖추었는가?			
	(사육실 환경)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는 적절하게 교환, 세척,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위생	(작업환경-환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유지하는가? 시설/장비현황 :			
	(작업환경-방충방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가? - 시설/장비현황 :			
	(개인위생) 작업자는 적절한 복장(작업복, 작업화, 작업장갑, 작업모 등)을 항상 착용하고 있는가?			
	(위생) 시설 내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			

	(위생) 시설 내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관리일지가 있는가?			
	(위생) 세척, 소독 시설에 사용 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종사자들이 준수하고 있는가?			
	(위생) 주기적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연구자의 안전	연구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직원들의 건강검진 - 예방접종(예 : 광견병,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등) - 사고(동물에 물리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보고체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개인보호장비 지급 - 재해유발물질 등에 따른 별도 보관장소 설치 및 관리			
동물의 사용	실험동물 검역실을 갖추고 있는가? 동물종별 수용을 위한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 등을 구비하고 활용하는가?	여/부 ()		
	동물구입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관여하며 실험목적과 시설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체계가 있는가?			
	동물을 수령할 때에 운송 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가?			
	동물 반입 시 수의사나 전문인력에 의해 검역하고 충분한 순화기간을 거쳐 반입하는가? - 검역업무담당			
	동물 관리와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가?			
	동물종, 계통별 특이사항을 고려한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가?			
	임신, 수술 등 특수사항을 고려한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가?			
	동물의 급이, 급수 관리와 실험에 맞는 사료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급이 용이성, 오염 여부, 영양과 급이량, 특수 영양성분의 공급, 사료 유통기한 확인, 급이 기록, 보관상태, 급수기 위생, 음수 검사, 급수기 관리, 음수의 소독 또는 멸균상태, 공급량 등			
	깔짚 등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공급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 깔짚 검사성적서, 흡수력, 분진도, 보관, 위생, 교환 빈도 등			
	행동풍부화물 등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공급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 동물종별 적정물품 공급, 풍부화물 관리 등			
	동물의 사육밀도와 동물종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가?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의 전후 보고체계가 있는가?			
	동물용의약품 또는 사육물품의 관리체계가 있는가?			
	케이지, 펜 등 동물의 1차 사육공간(사육상자)의 관리가 적절한가? -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표현이 가능한 환경 - 사료와 음수 섭취 용이성, 위생			

	-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 - 적정 동물 수 또는 동물 수용 등			
	사육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가? - 일일 온습도 편차, 환기 횟수, 조도, 소음, 진동 등			
	사육상자에는 실험동물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동물의 종, 계통, 시험기간 등)가 표시되어 있는가?			
	사육실내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 동물의 반입·반출시 관리자의 확인절차 마련 - 사육실 내 동물 사육현황 기록·관리			
	실험 후 동물검사를 실시하고 동물의 사후처리, 기증, 분양 등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가?			
교육·훈련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 - 교육이나 훈련내용 - 주기			
	연구자와 위원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 - 교육이나 훈련 내용 - 주기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계획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록	시설, 장비, 설비와 동물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작업장, 시설, 장비, 설비 등의 소독, 세척, 살균 및 청소 후에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구와 장비의 점검계획이 있으며, 유지보수의 기록이 있는가?			
	시설이나 운영문제 발생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보관장소는 작업장과 격리된 특정 장소에 있는가?			
	폐기물보관실에는 동물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재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사체 등 폐기물을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가? -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 사체처리 담당자 지정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관			
비상사태대응	재난, 정전,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람 및 동물)			
	소방, 보안, 비상전력 장치 등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상 훈련,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개선조치	동물복지, 사육이나 환경관리 등 위반사항 발생 시 보고 절차가 있는가? -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동물복지, 사육이나 환경관리 등 위반사항 발생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적절하게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의견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확인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